

초혁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 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초혁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방식은 예약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청약 및 공급 계약 등 주요 분양 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초혁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33-178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이 공고문과 관계 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9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원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당첨 제한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 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혼재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1.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분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최초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설거지 신고서상)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인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를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초혁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브릿지 인터넷 홈페이지(www.wj-ubora.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플러스옵션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전매제한이 없으므로 계약금 10%를 완납한 이후 전매가 가능하며, 전매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됩니다.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이에 본 아파트 계약체결(전매 포함)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8조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인지세 가산세는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해당지역 (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	기타지역 (원주시 6개월 미만, 기타 강원도 거주)				
일정	2022.05.09.(월)	2022.05.10.(화)		2022.05.11.(수)	2022.05.17.(화)	2022.05.18.(수) ~ 2022.05.25.(수)	2022.05.30.(월) ~ 2022.06.01.(수)
방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10:00 ~ 17:00)	견본주택(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원주시 단구동 1486-1) 		

※ 1순위 청약 시 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1.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는 해당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원주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주택과-14485호(2022.04.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26번지 외 4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6개동 총 4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3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4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1세대 포함)]
- **입주 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274	01	067.4148	67	67.4148	21.7850	89.1998	43.8990	133.0988	37.5920	97	9	9	19	2	9	48	49	7
		02	084.9895A	84A	84.9895	27.5588	112.5483	55.3433	167.8916	47.3921	190	19	19	38	5	19	100	90	13
		03	084.9814B	84B	84.9814	28.3130	113.2944	55.3380	168.6324	47.3876	28	2	2	5	-	2	11	17	2
		04	084.9106C	84C	84.9106	27.4703	112.3809	55.2919	167.6728	47.3481	116	11	11	23	3	11	59	57	8
		05	102.9003	102	102.9003	32.7061	135.6064	67.0064	202.6128	57.3795	44	-	4	-	1	-	5	39	3
		06	125.5925	125	125.5925	42.6897	168.2822	81.7830	250.0652	70.0332	1	-	-	-	-	-	-	1	-
합계											476	41	45	85	11	41	223	253	33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 원]

주택형	구분	공급세대수	총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종도금 (60%)						전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기기자세	계		계약 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22.09.20.	2023.02.20.	2023.07.20.	2023.12.20.	2024.02.20.	2024.08.20.	
067.4148	67	97	1층	4	76,687,000	190,313,000	-	267,0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80,100,000
			2층	7	76,687,000	194,613,000	-	271,300,000	27,130,000	27,130,000	27,130,000	27,130,000	27,130,000	27,130,000	27,130,000	27,130,000	81,390,000
			3층	7	76,687,000	198,813,000	-	275,50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82,650,000
			4층	7	76,687,000	204,513,000	-	281,20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28,120,000	84,360,000
			5층 이상	72	76,687,000	207,413,000	-	284,10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28,410,000	85,230,000

			1층	12	96,679,000	257,921,000	-	354,60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106,380,000
084.9895A	84A	190	2층	13	96,679,000	263,621,000	-	360,30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36,030,000	108,090,000
			3층	13	96,679,000	269,321,000	-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4층	13	96,679,000	276,821,000	-	373,50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112,050,000
			5층 이상	139	96,679,000	280,621,000	-	377,30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113,190,000
			1층	1	96,670,000	261,730,000	-	358,40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107,520,000
084.9814B	84B	28	2층	2	96,670,000	267,430,000	-	364,10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109,230,000
			3층	2	96,670,000	273,230,000	-	369,90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36,990,000	110,970,000
			4층	2	96,670,000	280,830,000	-	377,50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113,250,000
			5층 이상	21	96,670,000	284,630,000	-	381,30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38,130,000	114,390,000
			1층	8	96,590,000	250,410,000	-	347,0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084.9106C	84C	116	2층	8	96,590,000	256,010,000	-	352,600,000	35,260,000	35,260,000	35,260,000	35,260,000	35,260,000	35,260,000	35,260,000	105,780,000
			3층	8	96,590,000	261,510,000	-	358,10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35,810,000	107,430,000
			4층	8	96,590,000	268,910,000	-	365,50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36,550,000	109,650,000
			5층 이상	84	96,590,000	272,610,000	-	369,20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36,920,000	110,760,000
			1층	2	117,054,000	270,405,455	27,040,545	414,50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124,350,000
102.9003	102	44	2층	3	117,054,000	276,405,455	27,640,545	421,10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126,330,000
			3층	3	117,054,000	282,405,455	28,240,545	427,70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128,310,000
			4층	3	117,054,000	290,405,455	29,040,545	436,50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130,950,000
			5층 이상	33	117,054,000	294,405,455	29,440,545	440,90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44,090,000	132,270,000
125.5925	125	1	15층	1	142,867,000	408,575,455	40,857,545	592,300,000	59,230,000	59,230,000	59,230,000	59,230,000	59,230,000	59,230,000	59,230,000	177,69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67.4148	084.9895A	084.9814B	084.9106C	102.9003	125.5925
약식표기	67	84A	84B	84C	102	12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등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플러스옵션(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 및 플러스옵션(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플러스옵션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예정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중 선납금액 및 다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견본주택은 84A, 84C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67, 84B, 102, 125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아이소 및 사업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인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일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대지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등,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사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5.09(월) (청약홈 : 09: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모바일 모두 가능- 견본주택 방문 청약-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전 은행 가입자)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에 한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m² / 세대)

구분	67	84A	84B	84C	102	125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	4	1	2	-	9
	국가유공자	2	3	1	2	-	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4	-	2	-	7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1	4	-	2	-	7
	중소기업 근로자	3	4	-	3	-	10
	계	9	19	2	11	-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19	2	11	4	-	45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38	5	23	-	-	8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5	-	3	1	-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9	19	2	11	-	-	41
합계	48	100	11	59	5	-	22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인터넷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청약 신청일 14:00 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강원서부 보훈지청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선정 방법**
 - 선정 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원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8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 포함]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악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월천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민간택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가구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사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증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청약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1.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분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순위 청약신청 시 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1.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는 해당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원주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기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원주시 6개월 미만 거주자,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5.09(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원주시 단구동 1486-1)
일반공급	1순위	2022.05.10(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05.11(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신청 시 원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2021.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는 해당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원주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05.17.(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05.30.(월)~2022.06.01.(수)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 (장소 : 원주시 단구동 1486-1)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홈페이지(www.wj-ubora.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5.17(화) ~ 2022.05.26(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p>-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5.1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안내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신청 내용과 대조 등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계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구 분	일정 및 장소
제출기한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 2022.05.18.(수) ~ 2022.05.25.(수) 16:00까지 (8일간) 예비입주자 : 개별통지 예정 (정당계약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개별통지일까지이며 당첨자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가능함)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 원주시 단구동 1486-1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시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표1]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예비입주자 포함)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input type="radio"/>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input type="radio"/>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니,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하단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참고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하단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안내 참고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후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하단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안내 참고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하우 발행분,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하단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참고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하단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안내 참고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p>※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p>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p>※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input type="radio"/>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자영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금년도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등기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②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견본주택 -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는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안내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세무서 - 해당 직장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안내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월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e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VI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일시 : 2022.05.30(월) ~ 2022.06.01(수) 3일간 10:00 ~ 16:00	원주시 단구동 1486-1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견본주택	1533-1780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 임의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아래 "계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기본 서류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input type="radio"/>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input type="radi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 필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input type="radio"/>		인감도장(계약자)	
	<input type="radio"/>		위임장(계약자)	
	<input type="radio"/>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당첨자 본인만 계약 가능합니다.(대리인 계약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5-839827	(주)케이티에스테이트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흥길동 : 1011001흥길동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상기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계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 추후 공지예정)
- 중도금·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대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4)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부과고지)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따름.)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품목 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일(발주 등으로 실질적 시공착수시점으로 간주)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음.) 또한,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공급(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및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금융기관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서 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대출 미신청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 대출한도 부족 등)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후 대출기관의 응자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서류 제출 및 날인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 시 고객이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후불제" 혜택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 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직전 이자납부일(중도금 대출은행이 지정한 이자납부일)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청약 당첨이 제한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2021. 02. 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이자후불제 이자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 · 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맘스카페, 키즈룸, 주민공동시설 등(입주 시 운동시설과 종류 등 각종 비품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규정에 의거합니다.

VIII

플러스옵션(유상옵션) 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 방법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증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2.09.20.	입주지정일	
67	13,800,000	1,380,000	1,380,000	11,040,000	
84A	17,400,000	1,740,000	1,740,000	13,920,000	
84B	17,500,000	1,750,000	1,750,000	14,000,000	
84C	17,400,000	1,740,000	1,740,000	13,920,000	
102	20,950,000	2,095,000	2,095,000	16,760,000	
125	26,000,000	2,600,000	2,600,000	20,8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증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5-839840	(주)케이티에스테이트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흥길동 : 1011001흥길동

※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유상옵션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현금납부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일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님.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년 02월 18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급수/급탕배관, 가스배관, 위생기구,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주택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반드시 행위허가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비확장세대의 배수관이 확장세대의 거실/침실 천장 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접세대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유상옵션)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종류 및 가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개소	에어컨 설치 위치	공급금액	비고
-----	----	-----------	------	----

			옵션금액				
				계약금 10%	증도금 10%	잔 금 80%	
				계약 시	2022.09.20.	입주자정일	
67	4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2	선택2 : 거실+침실1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3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84A	5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2	선택2 : 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4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950,000	595,000	595,000	4,760,000	
84B	5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2	선택2 : 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4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950,000	595,000	595,000	4,760,000	
84C	4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2	선택2 : 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3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	4,750,000	475,000	475,000	3,800,000	
102	5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750,000	775,000	775,000	6,200,000	
	2	선택2 : 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4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125	6	선택1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서재+가족실	9,700,000	970,000	970,000	7,760,000	
	2	선택2 : 거실+침실1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5	선택3 : 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서재	8,300,000	830,000	830,000	6,640,000	

•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구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서재	알파룸(가족실)	실외기
모델명 (LG전자)	67 타입 : RNW0520C2SP	67 타입 : RNW0200C2SP	67 타입 : RNW0200C2SP	67 타입 : RNW0200C2SP	125타입 : RNW0160K2SP	84A타입 : RNW0160K2SP 84B타입 : RNW0160K2SP 102타입 : RNW0160K2SP 125타입 : RNW0600C2SP	67 타입 : RPUQ0402S2R 84A타입 : RPUQ0503S2R 84B타입 : RPUQ0503S2R 84C타입 : RPUQ0503S2R 102타입 : RPUQ0503S2R 125타입 : RPUQ0302S2R RPUQ0402S2R
	84A타입 : RNW0720C2SP	84A타입 : RNW0320C2SP	84A타입 : RNW0200C2SP	84A타입 : RNW0200C2SP			
	84B타입 : RNW0720C2SP	84B타입 : RNW0320C2SP	84B타입 : RNW0200C2SP	84B타입 : RNW0200C2SP			
	84C타입 : RNW0720C2SP	84C타입 : RNW0320C2SP	84C타입 : RNW0200C2SP	84C타입 : RNW0200C2SP			
	102타입 : RNW0720C2SP	102타입 : RNW0320C2SP	102타입 : RNW0200C2SP	102타입 : RNW0200C2SP			
	125타입 : RNW0720C2SP	125타입 : RNW0400C2SP	125타입 : RNW0200C2SP	125타입 : RNW0200C2SP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판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확장형 가구 등 추가 플러스옵션(주방가구,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등)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적용사항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 금 80%	비 고
					계약 시	2022.09.20.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3단 중문	67, 84A, 84B, 84C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02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125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거실	아트월	고급타일	67, 102	430,000	43,000	43,000	344,000	
			84A	420,000	42,000	42,000	336,000	
			84B	400,000	40,000	40,000	320,000	
			84C	330,000	33,000	33,000	264,000	
			125	270,000	27,000	27,000	216,000	
주방	조명특화	우물천장 + 간접조명	67	160,000	16,000	16,000	128,000	
			84A	210,000	21,000	21,000	168,000	
			84B	180,000	18,000	18,000	144,000	
			84C, 125	150,000	15,000	15,000	120,000	
			102	250,000	25,000	25,000	200,000	
	주방상판+벽체+조명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조명	67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84A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84B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84C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102	4,450,000	445,000	445,000	3,560,000	
			125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침실1+서재	수납강화형	대형드레스룸+불박이장+유리 슬라이딩도어	84C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125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침실3	불박이장	고급 불박이장	84A, 84B, 84C, 102	950,000	95,000	95,000	760,000	
침실2			125	950,000	95,000	95,000	760,000	
알파룸	펜트리	시스템장	84A	500,000	50,000	50,000	400,000	

			102	700,000	70,000	70,000	560,000	
통합형 거실	유리슬라이딩도어		84B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3) 가전 플러스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증도금 10%	잔 금 80%	비 고
				계약 시	2022.09.20.	입주지정일	
주방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빌트인장	67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빌트인
		84A, 84B, 84C, 102, 125	6,250,000	625,000	625,000	5,000,000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하이브리드 쿡탑	전주택형	800,000	80,000	80,000	640,000	

※ 빌트인 냉장고 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 시 주방 냉장고장은 빌트인장으로 변경 시공되니, 계약 전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플러스옵션(유상옵션) 금액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플러스옵션(유상옵션)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49437-04-024516	(주)반도건설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흥길동 : 1011001흥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옵션(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 확장공사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구 등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한 유상옵션 품목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현금납부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일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유상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님.
- 플러스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플러스옵션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플러스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플러스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플러스옵션(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자재발주 등 시공상의 문제로 실질적 시공착수시점 이후에는 플러스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플러스옵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 콘센트는 거실, 침실1에만 설치·시공됩니다.
- 플러스옵션은 분양 당시 기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실질적 시공착수시점(1차 중도금 납부일) 이후 계약해제가 불가함은 물론 판매가 또는 사양(모델)에 대하여 할인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는바 계약 전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기 옵션 계약도 부수하여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상기 플러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경우 확장기본형 선택 시, 거실 기준 알파룸측 벽면에 아트월이 설치되나, 유상옵션형(통합형 거실) 선택 시 거실 기준 침실3측 벽면에 아트월이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 공통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 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수준
바닥재	바닥마감재(마루, 타일, 대리석, 걸레받이 포함)	바닥 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천장재	벽지, 거실 아트월 및 벽판넬, 걸레받이, 신발장 및 일반가구류, 천장지(욕실천장재), 반지돌림, 타일,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무선AP, 네트워크스위치, 동체감지기(1,2층, 최상층에 한함), 스위치, 콘센트,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보일러연동, 가스계량기연동, 실외기연동, 환기연동, 온도조절기, 소방감지기, 비상방송스피커, 가스감지기	벽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해당부위), 천장틀 위 석고보드 기본형 제공품목에 해당하는 전기배관, 배선만 공급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기본형 제공품목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의 전기배관, 배선만 공급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액세서리, 욕실수전, 욕실장, 샤워부스 등 마감류, 콘센트, 부부욕실 스피커폰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기본형 제공품목에 해당하는 전기배관, 배선만 공급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상부장, 하부장(상판포함), 수납장식장, 액세서리, 벽타일, 렌지후드, 주방수전, 주방액정TV, 가스쿡탑, 전기오븐, 스위치, 콘센트, 온수분배기 구동기 및 제어함, 자동식소화기 등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기본형 제공품목에 해당하는 전기배관, 배선만 공급
일반가구	신발장, 화장대, 드레스룸문틀, 불박이장, 콘센트	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각종(ドレス룸 포함) 문틀 및 문짝(침실, 욕실 하드웨어),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각종 선반, 주방상하부장) 등,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현관문, 설비배관

- 마이너스옵션 금액

주택형	67	84A	84B	84C	102	125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4,200,000	30,540,000	30,740,000	30,490,000	37,690,000	45,690,0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옵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부분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 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플러스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이나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 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합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명 및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기기, 조명기구, 소방기구, 설비기구들은 기본형 제공품목의 전기 배관, 배선만 제공됩니다.
 - 기본형 제공 품목의 경우 쿡탑, 오븐, 시스템에어컨의 부하 가산이 제외되므로 인입 간선이 확장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하 사용 추가에 따른 증설 필요 시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자 개별 발코니 확장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IX

기타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일반사항(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계약자의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포함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일정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고, 1·2순위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설비·발전기설비·주차장·휀루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어린이집/경로당 및 외부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중앙광장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 이행하여야 함)
- 아파트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을 반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입주자 등에게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비주거(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비치 및 설치되었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청약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청약자 및 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대지 주변현황(청약자 및 계약자의 현장확인 의무),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청약자 및 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포츠조명 등은 전시용으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분양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을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사인물, 조경시설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동영상 및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동영상으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확장 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관설IC 하이패스,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관련 상황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인근 및 원주시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단구초등학교로 배정하고, 중·고등학교는 관내 배치 예정임. 다만, 본 사업지의 학교 배치는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이며,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설립 및 학급당 학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등 학생배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음.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주변단지 및 각종 기반시설(도로, 학교, 공공시설, 녹지 등)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장 주변 단지 북측 관설 사거리, 홈플러스, 북서측 연결녹지 및 균생상가, 단지 북동측 치악로, 남측 관설IC 등이 위치하며, 인접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현장 확인 및 견본주택 비치된 모형도, 도면 등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실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외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정부의 정책 또는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타 사업지의 외부특화디자인, 마감사양,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조경, 기타 시설물 등의 내용을 본 사업지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현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폭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동측 35m 도로 쪽에 면한 101동과 106동 측면에 높이 13M(아파트 약 5층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구간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외부로 103동 남측에 인접하고 104동 서측 부근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 심의에 따라 구간 및 도로폭, 선형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당 사업부지 부근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당 사업부지 대지면적의 일부 증감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진출입 공간을 제외한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에는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함.
- 단지 경계부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한전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한전공급설비 주변은 담장 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경계의 경사로, 조경석, 완충녹지의 높이 및 기울기, 식재계획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 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부지(공원, 연결녹지, 도로 등)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본 공사 시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계단 단수 및 법면기울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법면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구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공급(분양)계약서를 준용한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과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하나의 단지로 복리시설과 공동주택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임을 인지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저층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비치된 도면을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인근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해당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심의 결과 및 당사 계획에 따라 녹지의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도로, 교통시설물, 버스정류장 등)은 본 공사 시 제외 구간임.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의 명칭은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와 협의된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탑상형, 판상형 구조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단지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 일조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옥상조형물 및 단지 주출입구 문주 등은 디자인이 수정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석재마감 및 석재뿔칠 시공 예정으로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와 협의된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문주,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디자인특화계획과 교통성검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및 냉방용 냉각탑이 상가 옥상바닥에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카페 등) 및 부대시설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적용되고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 가능하며, 소방차 주차공간 및 인명구조를 위한 고가사다리 이용을 위하여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차 주차공간에는 해당 구간이 포장 바닥면에 표기될 수 있음.
- 106동 저층부 주변에 발전기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발전기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공동주택 등 번호 부여원칙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리수거장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공동주택용과 근린생활시설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인접동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악취 및 조망을 해칠 수 있음.
- 102동 남동측 외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거나 및 조망을 해칠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도면을 확인바람.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근린생활시설 냉방용 냉각탑 및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람.
- 각 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천장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1층 주차 통행로 2.7M, 지하2층 차량통행로 2.3M, 각각 주차구획 2.1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시설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02동, 103동 세대는 단지 내 주차관제 경광등, 출차주의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모형에 표현된 용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경계에 레벨차이 극복을 위하여 해당 구간에 조경석 혹은 용벽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여부에 따라 레벨 또는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단차가 존재하는 동·라인이 있으며, 균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독서실·작은도서관, 주민휴게공간, 버스정차대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수 있고,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인가 사항에 따라 단지 남동측 주출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과 야간의 전조등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 차량출입구는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 등 비상차량 출입만 가능하므로 평상시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됨.
- 단지 내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한국전력공사 개폐기가 노출되어 설치,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에서의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이 되며, 점포간 단차가 발생함. 또한 인접한 저층세대는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악취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입주민 및 외부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호실별 출입문의 위치 개폐방향등은 사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 및 그 길이,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상이함으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2층까지 총 2개층이며 각 동별로 연결되는 위치 및 출입문이 있으니 계약 전 비치된 도면을 확인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종합계약 요금제로 시공 계획이며, 입주 후 전기차충전기 요금제 또는 종합계획 요금제 선택 및 모자분리 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별 접근 및 수량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난방 및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협의 과정에 따라 106동 후면부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 동의 지상 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 및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필로티 공간으로 인한 인접 세대는 외부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나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 형태 및 크기는 계획상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의 위치, 크기,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의 경우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지하층 접근로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저층부 인접세대는 조망 불리 및 악취로 인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2동, 103동 저층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휘트니스, 상가) 및 방재실, 관리사무소로 인하여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받을 수 있음.
- 104동, 103동 저층 일부세대는 어린이집, 독서실, 작은 도서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조망 및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받을 수 있음.
- 104동 저층 일부세대는 운동시설로 발생하는 소음, 조망 및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받을 수 있음.
- 101동, 106동 지하1~2층에는 기계실 및 전기실이 인접하고 있어 저층부에는 진동 및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 101동, 106동 지하1~2층에는 기계실 및 전기실이 E/V코어와 인접하고 있어 진동 및 소음발생의 우려가 있음.
- PD, AD, AV, EPS/TPS, 등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민 이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각세대별 이사차량의 통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필히 각 세대별 배치계획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 102동 하부에는 경비실 및 맘스카페, 경로당이 설치되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단지 내 옥탑(102동, 103동) 또는 제연휀 DA(102동, 103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층(지하1층 102동, 103동 제연휀룸 또는 PIT)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전파상태, 인허가, 이동통신사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TV공청 안테나는 수신방해가 없는 임의의 동 옥상에 설치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용시설이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변경 정산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에는 환기를 위한 급/배기 팬이 설치되며 운전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2층 주동 PIT내 세대 개별창고가 2단으로 설치되며, 동호수에 따라 아래칸 또는 윗칸으로 배정될 수 있음.
- 공동현관 에어샤워기는 각 동의 라인별 지상층 1개소 설치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는 각 동의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신호등과 실외통합환경센서의 위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지 내 1개소 설치하며,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빛공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산소발생시스템은 커뮤니티시설인 독서실에 설치하며, 사용 및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음.
- 단지 공용부에 설치되는 ICT 특화 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공용부 ICT 특화 서비스 : 공동현관 에어샤워기, 미세먼지신호등, 실외통합환경센서, 산소발생시스템, 지능형영상분석시스템, 엘리베이터 비명감지시스템, 스마트워패스시스템)

xi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실내환경센서,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싱크대와 불박이장 바닥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내부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에서 현관, 욕실, 발코니쪽은 단차가 있으며 습식발코니는 바닥구배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전, 우오수 선홍통, 드레인, 배수구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목창호의 높이와 창호개폐 방향 및 사양은 견본주택 기준이며,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 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탑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펜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 보일러가 설치됨.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 마루, 타일, 인조대리석 등 자재 특성상 색상 및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이 다를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pm 10mm$)가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기본형 세대 선택 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 천장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실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고 별도의 드레인이 없으며, 탑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실외기의 냉매배관 연결부위 온도차에 의한 결로수 발생은 하자가 아님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 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의 세부 기능은 입주 시 가능한 기술로 적용되고 서비스 종류 또한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KT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현장 여건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제공되는 KT 인터넷/IPTV 서비스는 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무상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주자가 원활 경우 타사 서비스 또한 선택 및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되지 않음. 무상 제공 이후에는 서비스 만료 또는 입주민 개인이 자체적으로 유상 연장 이용하여야 함.
- KT 인공지능 스피커(기가지니)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환경 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이며, 일부 서비스는 KT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함.
- 유보라 마크브릿지에 한하여 제공되는 기가지니 단말은 입주 시 제공되는 품목으로 무상제공기간동안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
- KT AI 아파트 서비스 사용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함.
- KT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기가지니와 홈네트워크의 연동 서비스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 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 계속 이용 시 세대별로 청약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함.
-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KT IPTV 연동은 불가하지만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함.
- IoT 가전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됨.
- 견본주택과 홍보영상의 서비스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사유로 서비스 항목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세대용 에어샤워기는 저층부 환경특화로 1층 및 125타입 세대에 한하여 제공됨(필로티 저층부 제외)
- (에어샤워 관련) 단위세대 및 공용부 설치되는 에어샤워에 대한 필터교체 및 유지보수 일체는 입주자분이며, 입주/계약 시 세대 및 공용부 에어샤워 설치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해체에 대한 비용과 동일한 타입의 타세대와 동일한 마감이나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홈네트워크,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니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견본주택에는 84m'A, 84m'C 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라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람.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 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에 설치된 매립조명은 단위세대 가구 소품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과 홍보 영상의 서비스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사유로 서비스 항목이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고지사항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한 근린생활시설 진입계획 및 출입구가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에는 냉각탑, 지붕에는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모형도 및 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옥상 바닥에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냉각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모형도 및 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모형도 및 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도로면에 면한 상가 전면부분에는 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본 공사 시 계단단수 및 경사기울기, 상가 출입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경사도로에 의한 접근으로 점포 간 바닥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점포별 전기 용량은 5000VA로 계획되어 있고, 점포별 증설 필요 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전력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수의자 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용 한전 개폐기가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 바탕 또는 옥상에는 배기팬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진동, 열기,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 청약 및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자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불가항력으로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양해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 시 열람가능) 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바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부담임.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부담임.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부담임.
-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 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원주시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 KT 인공지능 스피커(기가지니)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KT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함.
- KT ICT 서비스는 추후 브랜드명 또는 서비스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해당 KT ICT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공용부 및 세대에 제공되는 ICT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함.(전매 시 양도인, 양수인이 협의하여야하며,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음.) 또한,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 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전동기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윤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4호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10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단위 세대 내 현관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윤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조명기기, 옥외등 등 LDE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 수전류(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욕조, 주방수전)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지열시스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시스템은 공용 냉난방으로 일부 사용 예정임 - 차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차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일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성테크	주식회사 한성테크
감리금액	1,850,066,900원	421,660,000원	87,725,000원	136,125,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초혁신도시 유보라 마크브릿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03800 호	일천이백이십억사백삼십삼만원정 ₩122,004,33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주)케이티에스테이트	(주)반도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17층(대치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11층(역삼동, 허바허바빌딩)
사업자등록번호	120-87-57657	605-81-87475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wj-ubora.com

■ 견본주택 위치 : 강원주 원주시 단구동 1486-1

■ 분양문의 : 1533-178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